

의안번호	2203304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계번호	24B32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5의2.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5호의 급여에 같음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함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에 가입한 사람을 말함 14.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u>기업</u>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23조의2 (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운영)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다음 각 호의 공단에서 운영함(제1항)</u> 1. 근로복지공단(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2. 국민연금공단(상시 100명 초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23조의 14(국가의 지원)	국가는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u>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23조의 15(국고부담) 신설	국가는 매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u>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u>	의무규정
5	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6. <u>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3조의2(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 미대상 –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새로운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그러나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기 어려우며, 지원 수준 또한 예산의 범위 내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23조의15(국가 부담)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매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u>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u>	6. <u>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u>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¹⁾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을 재정비하여 2023년까지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지원금을 2024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제공하며,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대상을 확대함
 - (사업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방법)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1)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의 내역사업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업

- (지원내용) 2024년 기준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0명, 최대 3년²⁾
- (시행경과) 2022년 4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022년 9월 사업주 재정지원 실시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

- 첫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또는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 따라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100명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인 요건이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어 지원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 중에서 가입자의 월평균보수가 268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있음
- 둘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⁵⁾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2) 시행 3년 이내에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한시(3년간) 재정지원 실시

3)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022-83호

5)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

- 지원대상자 중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기 곤란
- 초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지원단가가 과소 추계될 가능성 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셋째,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연구용역⁶⁾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계하였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1~100인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국재정학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효과성 분석」, 2023년 7월